

# 길동역 청년안심주택 길동생활(B동)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

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8-7 (B동)

공공지원 민간임대

2025. 07. 09.

(주)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## [주택개요]

- 주택위치 :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8-7 길동생활(B동) (5호선 길동역 1번 출구)
- 공급호수 : 총 270세대 중 급회 추가모집 공공지원민간임대 4세대 (특별공급 3세대, 일반공급 1세대)
- 단 지 명 : 길동생활(B동)
- 시 행 사(임대사업자) : (주)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- 시 공 사 : 이랜드건설(주)

※ 기존 계약자로 선정되었던 분들은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에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.07.09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
■ 당 단지는 사용승인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.(신규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금액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추가 가입이 됩니다.)

※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으니,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)

■ 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로 일반(개인)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개인사유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)

■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
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

■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
■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
■ 본 추가공고와 최초공고(2025.01.13.)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공고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본 추가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고를 따릅니다.

■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길동역 청년안심주택 길동생활 입주지원센터(02-553-8387)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## [공급일정 및 청약]



■ 입주지정기간 : 2025.07.24.(목) ~ 2025.09.01.(월), 오전09시 ~ 오후18시

### ■ 청약 문의

- 대표번호 : 02-553-8387, 월요일~금요일 09:00~18:00 (점심시간: 12:00~13:00)
- 홈페이지 : <https://www.gildonglife.co.kr/>
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(02-553-8387)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청약 신청 : 단지 홈페이지 (<https://www.gildonglife.co.kr/>)

-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**이메일(스캔본)**로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**모집 호수의 1000%(10배수)를 예비자로** 선정하며,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, 계약 후 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**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 ※ 예비자 소진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탈락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. 해당의 경우에도 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되며,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**

■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
■ 입주자 세대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.

■ 유의사항 (**최초 모집공고를 따름**)

## [공급현황]

### (1) 특별공급

(단위 : 만원)

| 공급 유형 | 주거 전용 (타입)                | 공급 호수 | 보증금 30% |     | 보증금 35% |     | 보증금 40% |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보증금     | 임대료 | 보증금     | 임대료 | 보증금     | 임대료 |
| 신혼 부부 | 31.68m <sup>2</sup> (31A) | 1     | 6500    | 61  | 7600    | 57  | 8600    | 53  |
| 또는 청년 | 33.85m <sup>2</sup> (33A) | 2     | 6700    | 64  | 7800    | 59  | 9000    | 54  |
| 소 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|
| 합 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|

### (2) 일반공급

(단위 : 만원)

| 공급 유형       | 주거 전용 (타입)                | 공급 호수 | 보증금 30% |     | 보증금 35% |     | 보증금 40%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보증금     | 임대료 | 보증금     | 임대료 | 보증금     | 임대료 |
| 신혼 부부 또는 청년 | 36.49m <sup>2</sup> (36A) | 1     | 8000    | 74  | 9300    | 68  | 10600   | 63  |
| 소 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|
| 합 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|     |

-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30%, 35%, 40%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,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.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.
- 기존 임차인이 있었던 경우,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되며, 변경할 수 없습니다. (계약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체결 전 상세안내 예정)

## [신청자격 및 제출서류]

■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.07.09.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,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

※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
■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**19세 이상 39세 이하**여야 합니다.

■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■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및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여야 합니다. \*신혼부부 및 쉼어형의 경우, 청약자(당첨자) 명의로 계약 체결(공동명의의 계약 불가)

■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)

- 자동차가액 기준 : “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” 준용

■ 그 외 신청자격 : **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름. 단, 소득 및 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**

- 2025년 소득기준 – **청약 시 아래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순위 선택 필요**  
**(청약 시 선택한 소득 수준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)**
  -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('25.02.27)

[단위 : 원]

| 순 위 |      | 1인 가구     | 2인 가구     | 3인 가구     | 4인 가구      | 5인 가구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순위 | 100% | 3,598,164 | 5,477,003 | 7,626,973 | 8,578,088  | 9,031,048  |
| 2순위 | 110% | 3,957,980 | 6,024,703 | 8,389,670 | 9,435,897  | 9,934,153  |
| 3순위 | 120% | 4,317,797 | 6,572,404 | 9,152,368 | 10,293,706 | 10,837,258 |

• 지역기준 – 동일 소득일 경우 지역 순위 적용

| 순 위 | 지 역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순위 | 서울특별시 강동구 | 거주자 : 주민등록상 주소지       |
| 2순위 | 서울특별시     | 대 학 : 소재지 내 대학의 재적증명서 |
| 3순위 | 그 외 지역    | 직 장 : 소재지 내 직장의 재적증명서 |

• 2025년 자동차 가액기준 – **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, 아래 가액보다 적은 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만 청약가능**

| 자동차가액   |
|---------|
| 3,803만원 |

• 2025년 자산기준

| 청 년             | (예비)신혼부부     | 비 고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30~39세 가구 기준 적용 | 소득 3분위 기준 적용 |          |
| 254             | 337          | 단위 : 백만원 |

※ 청년안심주택 청년(본인) 자산 기준은 **30~39세 가구** 금액을 따름

※ 청년안심주택 (예비)신혼부부 (구성될)세대 자산 기준은 **소득 3분위** 금액을 따름

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: 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르되, 최신(25년) 기준에 따름

※ “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”과 “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”의 차이

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)

[당첨자발표]

■ 단지 홈페이지 (<https://www.gildonglife.co.kr/>) 2025.07.17.(목) 14:00

- 당첨자 :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·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.
- 예비당첨자 :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,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

[별첨]

■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(최신(25년))

- 특별공급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, 정부24(인터넷)       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<br>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주민등록초본 (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※<br>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” 추가 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※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월평균 소득(해당 세대원(인원) 전체)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공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 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및 자산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 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득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<br><br>-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.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(해당 세대원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자                     | 무소득자       | 사실증명 (신고사실없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근로자      |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직장,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규취업자      |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직장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사업자     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규사업자      |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,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(사업자등록증 포함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연금관리공단,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인사업자      |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(사업자등록증 포함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|
| 자산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.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<br>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(금융, 주식, 보험 등 전체) 발급 후 작성<br>-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(대출 전체) 발급 후 작성<br>※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<br>※ 신용정보조회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결제원(인터넷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거래 은행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.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(사본, 해당자만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·월세인 경우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. [자동차 소유자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,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7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| 정부24(인터넷)                | 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
| 18.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<br>- 대학 : 재직증명서<br>- 직장 : 재직증명서 | 재직증명서 : 대학<br>재직증명서 : 직장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. 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주 후 7일<br>이내 제출                      |

- 일반공급 제출서류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,<br>정부24(인터넷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<br>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<br>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” 추가<br>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공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<br>(세목전체 / 과세 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    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<br>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
| 9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<br>또는 복지포털,<br>정부24(인터넷) |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주 후 7일<br>이내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